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1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모사업의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사업 선정 이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모사업 추진실적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안 제4조제2호).

나. 공모사업의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안 제5조).

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라. 공모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년도 공모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사업 지연·중단 및 국비 등 보조금 반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제5조제1항 중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공모사업의 추진 여부”로, “공모사업의 내용을”을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로, “알려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 완료 또는 국비 등 보조금 지원 종료 후 발생하는 중장기 재정부담 및 재원 확보 방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재정적 영향 및 향후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1. 당초 계획한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는 경우

2.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3. 사업의 목적 또는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상황, 예산 집행실적 및 재정부담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또는 국비 등 보조금의 반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와 개선대책을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사업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공모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정된 공모사업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

는 변경사항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2. 전년도 공모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사업 지연·중단 및 국비 등 보조금 반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신설>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 공모사업의 추진 여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 제출하여야 ----------.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② ----------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업 완료 또는 국비 등 보조금 지원 종료 후 발생하는 중장기 재정부담 및 재원 확보 방안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회 보고) (생 략)	제6조(의회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재정적 영향 및 향후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초 계획한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는 경우 2.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3. 사업의 목적 또는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 설>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상황, 예산 집행실

	적 및 재정부담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또는 국비 등 보조금의 반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와 개선대책을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